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인제, 강석주, 김 경,
김기덕, 김길영, 김성준,
김영철, 김원태, 김지향,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
박강산, 박승진, 박철성,
서준오, 송도호, 송재혁,
신동원, 심미경, 오금란,
왕정순, 이민옥, 이병도,
이숙자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환, 임규호,
임종국, 최기찬, 최민규,
한 신, 홍국표 의원(35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은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 및 지원받고 있음.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,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의 상황에 있어 민원실 등을 방문했을 때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 취약계층에게 수어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규정 신설 (안 제7조제1항제11호)
- 나.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 중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기존 통 번역 외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확대 규정 (안 제7조제2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」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통역·번역”을 “통역·번역 및 수어통역”으로 한다.

11.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·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1. (생략)</p> <p>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<u>통역·번역</u> 서비스의 제공</p> <p>8. ~ 11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·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</u></p> <p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 <u>통역·번역 및 수어통역</u> - -----</p> <p>8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제11호(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·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 - ※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는 관련부서(여성가족정책실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7조	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(다문화가족)	9,459,933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(안 제7조제1항제11호)

나. 전제

- 관련부서 문의결과¹⁾ 기시행 중인 3개 시립병원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추계
 - (인 건 비) 각 병원별 근무시간 및 인건비가 모두 달라 보라매병원의 채용형태²⁾를 준용하여 추계
⇒ 평균연봉 34,445천원을 전제
 - (배치인원) 자치구 별 각 1명씩 배치를 가정하여 총 25명(25개 자치구) 전제
- (발생기간)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
 - 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- 1)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
- 2) [기시행사업] 시립병원 수어통역사 근무현황

병원명	배치인원	채용형태	근무시간	평균연봉
서울의료원	1명	정규직	08:30~12:30	25,149천원
보라매병원		정규직(장애인특별채용)	08:30~17:30 (주1회 16:30퇴근)	34,445천원
서남병원		정규직(장애인특별채용)	08:30~17:30	46,150천원

※ 자료 :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

라. 방법

- 서울시 시민건강국 제공자료(기시행 사업) 활용 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4,305,625천원(연평균 861,125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수어통역사 인건비 지원(제7조)		861,125	861,125	861,125	861,125	861,125	4,305,625
	소계(a)		861,125	861,125	861,125	861,125	861,125	4,305,625
수입	-		-	-	-	-	-	-
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	861,125	861,125	861,125	861,125	861,125	4,305,625

4. 덧붙이는 의견

-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인건비는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지 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(안 제7조제1항제11호)

2. 세부추계내역

- 가. 총비용 = 4,305,625천원(연평균 861,125천원)

$$\begin{aligned}
 & \text{- 산출방식} = \sum_{i=1}^5 (\text{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연평균비용})_i \\
 & \quad \quad \quad i = \text{비용추계 연차(2025년~2029년)}
 \end{aligned}$$

나.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인건비 연평균 비용 = 861,125천원

= 인건비 × 인원

= 34,445천원 × 25명



2024 서초구가족센터

가족상담 통번역사 파견사업

가족의 마음을 잇는 통번역사를 파견합니다.

문의전화 070-7436-2012



1 가족상담 통번역사 파견사업 이란?

본 센터에서는 가족상담 현장에서 통번역사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양성한 통번역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.

2 지원언어

- 영어
- 중국어
- 일본어

3 이용 방법

- 담당자 전화 문의
※ 이력 및 활동가능 시간 안내
- 시간당 1만원
(기관에서 지급)
* 30분 이상 1시간 산정